

2017. 4. 10. 의결, 2017. 7. 1. 시행

## 36 도주 · 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

도주 · 범인은닉범죄의 양형기준은 도주(형법 제145조 제1항), 특수도주(형법 제146조), 도주원조(형법 제147조), 간수자의 도주원조(형법 제148조), 범인은닉(형법 제151조)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017.  
7. 1.  
시행

도주  
·  
범인  
은닉  
범죄

## 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### 01 | 도주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加重
1	도주	– 6월	4월 – 8월	6월 – 1년
2	특수도주	– 8월	6월 – 1년6월	1년 – 4년
3	도주원조	6월 – 1년6월	10월 – 2년	1년6월 – 5년

구분		감경요소	기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손괴 · 폭행 ·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(2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농아자</li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● 자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자의 범행인 경우(3유형)</li> <li>● 동종 누범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극 가담</li> </ul>	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li>● 처벌불원(2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/ul>

## 02 | 범인은닉 · 도피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범인은닉 · 도피	- 6월	4월 - 1년	8월 - 2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	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● 경제적 대가의 수수 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● 농아자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● 자수	● 동종 누범(위증, 증거인멸, 무고 등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● 소극 가담 ●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 가 크지 않은 경우	● 경제적 대가의 약속
	행위자 /기타	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	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이중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위증, 증거인멸, 무고 등 포함)

2017.  
7. 1.  
시 행

도주  
·  
범인  
은닉  
범죄

## [유형의 정의]

### 01 | 도주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
구성요건	적용법조
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	형법 제145조 제1항
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기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한 자	형법 제146조
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	형법 제147조
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	형법 제148조

### 02 | 범인은닉 · 도피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
구성요건	적용법조
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	형법 제151조

## [양형인자의 정의]

### 01 | 도주

#### 가.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
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체포자, 간수자의 방임 등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나.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
  -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다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2017.  
7. 1.  
시행

도주  
·  
범인  
은닉  
범죄

## 02 | 범인은닉 · 도피

### 가. 범행기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
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본범과 사실혼, 연인,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,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
  - ‘죄를 범한 자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나.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(예: 불법게임장 등을 영업하면서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‘바지사장’ 역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기로 정한 경우 등)
 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
  -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다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

#### 라.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변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쉽게 허위진술임이 발견된 경우 등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2017.  
7. 1.  
시행

도주  
·  
범인  
은닉  
범죄

## 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### 01 |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### 02 |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

## [공통원칙]

### 01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 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 한다.

### 02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### 03 |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2017.  
7. 1.  
시행

도주  
·  
범인  
은닉  
범죄

## [다수범죄 처리기준]

### 01 |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### 02 |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.

### 03 | 경합범의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

## Ⅱ. 집행유예 기준

### 01 | 도주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(3유형)</li> <li>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손괴 · 폭행 ·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(2유형)</li> <li>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 등)</li> <li>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피고인이 고령</li> <li>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/ul>

### 02 | 범인은닉 · 도피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제적 대가의 수수</li> <li>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 등)</li> <li>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제적 대가의 약속</li> <li>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</li> <li>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피고인이 고령</li> <li>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/ul>

2017.  
7. 1.  
시행

도주  
·  
범인  
은닉  
범죄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.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- ① 주요공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공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공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공정)사유와 일반공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공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공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